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2007년 6월 30일)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2013)에 따른 중재에 있어서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미국)(ELLIOTT ASSOCIATES, L.P. (U.S.A))

를 청구인으로

v.

대한민국

을 피청구국으로 하는

PCA Case No. 2018-51

청구인 측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

2023년 8월 4일

Arnold & Porter

PETER & KIM
ATTORNEYS AT LAW

목차

I.	서론	1
II.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판정 전 이자를 계산한 방법에 대한 “정정”을 신청함	2
	A. 중재판정부의 판정 전 이자에 대한 판정	2
	B. 중재판정부의 방법론에 대한 청구인의 변경 요구	3
III.	청구인의 신청은 제38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남	4
	A. 제38조의 적정 적용 범위	4
	B. 제38조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이 명백함	6
	1. 제38조는 중재판정부가 채택한 방법론에 대한 이의를 허용하지 않음	6
	2. 청구인은 판정의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6
	3.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명시적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정정을 신청함	8
	4. 청구인의 “정정” 신청은 오류가 있어 부적절함	9
	C.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이 대한민국의 신청과 같은 취지라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음	11
IV.	결론 및 신청 취지	15

I. 서론

1. 2023년 7월 18일, 피청구국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정정 및 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이하 “대한민국의 신청”).¹ 이러한 신청에서,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부가(추가 합의금에 대해) ‘세전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후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인한 중재판정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정 오류들을 지적하였습니다.² 이에 중재판정부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신청에 의견이 있다면 늦어도 2023년 8월 1일 화요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³

2. 2023년 7월 20일,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에 “청구인의 중재판정 정정 신청”(이하 “청구인의 신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신청은 비록 정정 신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처음 네 쪽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신청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위 정정 신청의 마지막 네 쪽에서 “예비적으로”(in the alternative),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이 입은 손실을 계산한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방법론적 오류(즉, 손실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오류)를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⁴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부의 2023년 7월 21일자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본 답변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⁵

3. 아래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청은 전혀 이유 없으므로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이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론”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해액 산정 방법론에 대한 정정 신청은 UNCITRAL 규칙 제38조(이하 “제38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⁶ 이러한 청구인의 신청은 선의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청을 반박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로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며, 청구인의 위 자인만으로도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신청과 달리, 대한민국의 신청은 중재판정상의 금액 오류(및 그에 상응하는

¹ 본 답변서에 사용되었으나 본 답변서에서 별도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대한민국의 신청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습니다.

² 대한민국의 신청, ¶ 2.

³ PCA가 2023년 7월 18일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당사자에게 보낸 서신 p. 2 참고.

⁴ 청구인의 신청, III항(표제는, “예비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손실의 계산 방식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⁵ PCA가 2023년 7월 21일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당사자에게 보낸 서신 p. 2 참고.

⁶ 청구인의 신청 ¶¶ 8, 12 (방법론적인 정정은 제38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청이 “추가적인 방법론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묘사함) 참고.

중재판정의 다른 부분들의 기계적 변경)를 단순히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재판정부의 방법론이나 논리에 여하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전략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하에서 청구인의 신청 취지를 요약하고(II항), 청구인의 신청이 제38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III항).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 정정 신청 절차에 소요된 대한민국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IV항).

II.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판정 전 이자를 계산한 방법에 대한 “정정”을 신청함

A. 중재판정부의 판정 전 이자에 대한 판정

4.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정정”은 중재판정부가 판정 전 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⁷ 청구인의 이러한 신청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정 전 이자와 관련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아시다시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대한민국)의 협정 위반으로 인한 청구인의 투자 가치 손실이 68,744,114,123원”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이후 대한민국에 “피청구국(대한민국)의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야기된 손해의 배상으로서”⁹ 위 금액을(미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이하 “**손해배상액**”). 또한,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위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 복리 5%로 계산한 판정 전 이자(이하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¹⁰

6. 중재판정부는 판정 961항에서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자의 판정을 다루는 중재 관행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입장과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배상 금액에

⁷ 청구인의 신청, ¶ 12 (청구인의 정정 신청이 본질상 “방법론적”이라고 묘사함) 참고.

⁸ 중재판정, ¶ 948. 분명히 하자면, 대한민국이 본 답변서에서 중재판정상 금액을 인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2023년 7월 18일자 신청에서 요청한 정정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편의와 일관성을 위해 본 답변서에서는 한화(KRW) 금액을 사용합니다.

⁹ 중재판정, ¶ 995(b). 중재판정, ¶¶ 938 (청구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한화 687억 원), 948 (상동), 952 (미화(USD)로 환산) 또한 참고.

¹⁰ 중재판정, ¶ 995(c).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긴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투자하였다면 얻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적용 이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중재판정부는 적용 이자율을 5%로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발생 이자를 2015년 7월 16일부터 본 판정일까지 연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¹¹

7. 간단히 말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손해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중재판정 원문: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긴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액(중재판정 원문: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기간을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실시한 판정 전 이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68,744,114,123원)에 대하여, 연 복리 5%로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발생한 이자. 이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의 주문 부분에서 명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¹²

B. 중재판정부의 방법론에 대한 청구인의 변경 요구

8. 청구인은 정정 신청에서 중재판정부에 판정 전 이자의 계산에 관한 방법론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 자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방법론에 따르면, 판정 전 이자는 손해배상액(68,744,114,123원)을 원금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방법론에 따르게 되면 중재판정부가 판시한 "전부 배상"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¹³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위와 같은 방법론 대신, *대한민국의 협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황*에서 청구인의 삼성물산 주식 전체의 *공정시장가치(FMV)*(이하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를 최초 손해배상액 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후 각 기간 동안의 원금은 (i)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실제 주식 매매 대금만큼 감소하는 반면, (ii) 그 이전 기간의 원금에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¹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원금은 1차 기간에 약 7,710억 원(청구인 보유(삼성물산) 주식 전량에 대한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가 반영됨), 2차 기간에 5,970억

¹¹ 중재판정, ¶ 961.

¹² 중재판정, ¶ 995(c) 참고.

¹³ 청구인의 신청, ¶ 17 참고.

¹⁴ 청구인의 신청, ¶ 17, ¶ 19의 표 참고.

원, 3차 기간에 1,550억 원, 그리고 4차 기간에 1,440억 원입니다.¹⁵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판정 전 이자가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금은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결정한 원금인 손해배상액(약 687억 원)보다 훨씬 큼니다.

9.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이 입은 손실로 보지 않아 그에 대한 배상을 명하지 않은 원금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대한민국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잘못된 전제와 달리,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그 어떤 기간 중에도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즉, 대한민국의 협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황에서 청구인의 삼성물산 주식 전체의 공정시장가치(FMV))”에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겼다(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달리,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입은 손실(즉, 손해배상액)은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 총액과 청구인의 실제 주식 매매대금총액의 차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¹⁶ 그러한 이유로 중재판정부는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 금액이 아닌,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정 전 이자를 명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손해를 "전부 배상"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청구인의 손실(즉,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지급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써, 이는 횡재하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청구인은 사실상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청구인이 입은 손실 원금(즉, 손해배상액 원금)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것입니다.

10. 대한민국은 이하에서 청구인의 신청은 제38조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II. 청구인의 신청은 제38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남

A. 제38조의 적정 적용 범위

11. 제38조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문의 계산상 오류,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오류나 누락된

¹⁵ 청구인의 신청, ¶ 19의 표.

¹⁶ 중재판정, ¶¶ 919, 932 참고.

사항을 정정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¹⁷ 주석서에 따르면 제38조의 적용 범위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을 받습니다.

- a. 첫째, (i) 계산상의 오류, (ii) 문서기록이나 타자 상의 오기(명백한 오기), (iii) 기타 앞의 두 가지 유형과 "유사한 성격"의 오류나 누락 등, 제38조에 열거된 유형의 오류만이 제38조에 따라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¹⁸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판정 이유상 실체적 오류(예를 들어 법률 또는 사실 분석의 오류)는 제38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¹⁹ 그러나 아래에서 추가로 서술하는 바와 같이, “계산상의 오류”²⁰ 유형을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제38조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해석하려는 청구인의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 b. 둘째,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오류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²¹
- c. 셋째, 정정 신청의 목적은 중재판정부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진정 의도한 바를 발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²² 해당 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정정 신청이 중재판정부가 판정상 의도한 바와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연히 중재판정부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¹⁷ UNCITRAL 규칙, 제38조 제1항.

¹⁸ 예를 들어, **RLA-177**, Stuart Isaacs, *Life after Death: The Arbitral Tribunal's Role Following Its Final Award*, in JURISDICTION, ADMISSIBILITY AND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LIBER AMICORUM MICHAEL PRYLES 357, 362 (Neil Kaplan & Michael J. Moser eds., 2018) 참고. (“정정이 가능한 오류는 계산상, 문서기록상, 타자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오류로 제한된다(강조 추가).”)

¹⁹ 예를 들어, **CLA-205**, Jan Paulsson & Georgios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Art. 38, ¶ 1 (“중재판정의 ‘정정신청’은 판정의 실체적인 판단을 재론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RLA-173**, David Caron & Lee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d. ed. 2013), Art. 38, p. 813 (정정 절차는 “중재판정의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중재판정부의 판정 이유를 재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참고.

²⁰ 청구인의 신청 ¶ 6 (제38조에 따라 정정이 가능한 “계산상의 오류”는 오로지 잘못된 소수점의 위치 등 계산 과정에서의 “타자상 또는 문서기록상 오류”라고 주장) 참고.

²¹ **RLA-176**, Nigel Blackaby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7th. ed. 2023), ¶ 10.14. **RLA-174**, Luiz Olavo Baptista, *Correction and Clarification of Arbitral Awards*, in ARBITRATION ADVOCACY IN CHANGING TIMES (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 CONGRESS SERIES NO. 15) 275, 283 (Albert Jan van den Berg ed., 2011) (“명백한 실수에 대한 정정은 판정 후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 . .”) 참고.

²² **RLA-175**, Gary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d. ed. 2022), § 24.03 (“정정이 중재인들의 진정한 의도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보장한다는(그리고 진정한 의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은 맞지만, 정정이 원 판정의(잘못된)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기는 어렵다.”) 참고.

12. 이하에서, 대한민국은 청구인의 신청이 위와 같은 정정 신청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B. 제38조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이 명백함

1. 제 38 조는 중재판정부가 채택한 방법론에 대한 이의를 허용하지 않음

13.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손실(즉, 손해배상액) 및 판정 전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채택한 방법론의 변경을 구하고 있습니다.²³ 전술한 바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배상액", 즉, 손해배상액(68,744,114,123원)에 대하여만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²⁴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방법론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삼성물산 주식 전체에 대한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 금액을 최초 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와, 그 이후의 각 기간에도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각 기간별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²⁵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이러한 신청이 제38조상 허용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부에... '계산에 사용된 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정정 신청은 부적절합니다."²⁶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채택한 판정 전 이자의 계산 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서 제38조에 규정된 "계산상의 오류"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중재판정부의 실제적 판정 이유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이의제기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만으로도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은 판정의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지 못함

14.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오류만이 제38조에 따라 정정될 수 있습니다.²⁷ 본건에서 청구인이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도 아닐 뿐만 아니라,

²³ 청구인의 신청, ¶ 12 (청구인의 정정 신청을 본질적으로 "방법론적"인 것이라고 묘사함).

²⁴ 중재판정, ¶¶ 948, 961, 995(b)-(c) 참고.

²⁵ 청구인의 신청, ¶ 17.

²⁶ 청구인의 신청, ¶ 7 (CLA-206, Jakob Ragnwalddh *et al.*, A GUIDE TO THE SCC ARBITRATION RULES (2019), p. 143 인용). RLA-173, David Caron & Lee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d. ed. 2013), Art. 38, p. 813 ("정정 절차는 중재판정의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중재판정부의 판정 이유를 재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참고.

²⁷ RLA-176, Nigel Blackaby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7th. ed. 2023), ¶ 10.14 참고.

오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은 손해배상액(청구인의 손실)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한 중재판정부의 의도적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제38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청구인은 "청구인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긴 기간(청구인의 손해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투자하였다면 얻었을 금액을 배상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모호하게 주장합니다.²⁸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스스로 명시한 위 원칙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이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청구인이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 즉 손해배상액(68,744,114,123원)을 박탈당한(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자를 배상 받도록 하는 것으로 판정 전 이자의 계산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16.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중재판정부가 채택한 원칙을 *변경함으로써* "오류"를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²⁹ 자신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체에 대한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하는 반면,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 이자 지급의 목적은 청구인이 오직 *손해배상액*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청구인은 판정 전 이자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계산 방법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실 원금(즉, 손해배상액 원금)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8조는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정 이유상 실제적 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³⁰

²⁸ 청구인의 신청, ¶¶ 14, 16 (중재판정, ¶ 961 인용).

²⁹ 청구인의 신청, ¶ 19의 표.

³⁰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Chorzów Factory* 사건에서 판시한 전부 배상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 신청, ¶ 13 (중재판정, ¶ 931 인용), ¶ 16 (중재판정부가 전부 배상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함) 참고. 이러한 주장은 중재판정의 실제적 이유에 대한 불복이므로 제38조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판정된 손해배상액이 *Chorzów Factory* 사건의 전부 배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이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 ¶ 931 참고.

3.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명시적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정정을 신청함

17. 전술한 바와 같이, 제38조에 따른 정정 신청은 중재판정부의 진정한 의도를 발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중재판정부의 진정한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³¹ (그러나)본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은 중재판정에 명시된 중재판정부의 의도에 직접적으로 배치됩니다.

18. 첫째, 청구인이 (정정 신청을 통해 중재판정부에) 제안한 정정은 청구인이 입은 손실 규모의 산정과, 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위배됩니다. 중재판정 919항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이 위반이 없었을 경우의 시나리오에서 청구인의 삼성물산 주식 FMV 내지 공정시장가격과 청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여 받은 실제 매도 수익금(삼성물산과의 합의서에 따라 수령한 수익금을 포함)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양 당사자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³²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932항에서, 청구인의 손실은 "가치평가일인 2015년 7월 16일 삼성물산 주가와 청구인이 이후에 지분을 처분한 가격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³³ 마찬가지로, 중재판정 933항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입은 손실은 (청구인의 삼성물산) 주식이 매각된 시점에, 그리고 그러한 매각으로 인한 주식 매매 대금이 매각된 주식의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 금액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만 "실현"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³⁴

19.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 자체는 청구인이 입은 손실이 아니며, 이는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액도 아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정정 신청에서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 전체에 상응하는 자금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을 손실의 원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³⁵은 중재판정부의 위와 같은 명확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³¹ RLA-175, Gary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d. ed. 2022), § 24.03.

³² 중재판정, ¶ 919. 중재판정, ¶ 824 참고.

³³ 중재판정, ¶ 932.

³⁴ 중재판정, ¶ 933.

³⁵ 청구인의 신청, ¶ 19의 표.

20. 둘째, 청구인이 (정정 신청을 통해 중재판정부에) 제안한 정정은 판정 전 이자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중재판정부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피청구인의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야기된 손해의 배상"³⁶, 즉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정 전 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 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상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자하였다면 얻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한) 배상"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68,744,114,123원)에 상응하는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면 얻었을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³⁷ 이러한 논리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에 오직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정 전 이자만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21. 그러나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액'이 아닌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를 원금으로 하여 판정 전 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³⁸ 이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서 판정 전 이자의 목적이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와 청구인의 주식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인 손해배상액에 대한 사용 가치의 상실을 배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4. 청구인의 "정정" 신청은 오류가 있어 부적절함

22. 대한민국은 설령 청구인이 제38조에 따라 정정이 가능한 중재판정의 오류를 특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정 신청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정정" 신청을 통해 중재판정에서 결정된 판정 전 이자를 500억 원 이상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에) 모두 오류가 있습니다.

- a. 첫째, 청구인의 정정 신청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를 단순 계산하는 (중재 판정에 명시된) 방식에서, 각 기간별로 구분된 여러 개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판정 전 이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 전 이자의 계산 방식에 대한) 방법론적인 변경은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b. 둘째, 청구인의 정정 신청은 총 4개의 각 기간 중 처음 2개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 금액에

³⁶ 중재판정, ¶ 995(b)-(c).

³⁷ 중재판정, ¶ 961 (강조 추가).

³⁸ 청구인의 신청, ¶¶ 19, 20.

상응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상실하였다거나, 해당 자금이 청구인 손실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1기간(즉, 2015년 7월 16일 - 2015년 9월 16일)의 원금은,³⁹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주식 전체를 계속 보유하였기에 아직 손실이 실현되었거나 자금의 사용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전체 주식에 대한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에 상응하는 771,026,741,100원입니다.⁴⁰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제2기간(2015년 9월 17일 - 2016년 3월 17일)의 원금으로 597,787,817,900원⁴¹을 주장하는 바, 위 원금에는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였기에 그와 관련된 손실이 현실화되거나 자금의 사용 가치가 상실된 적이 없는 주식매수청구대상 주식(Putback Shares)의 가정적 상황에서의 FMV(535,881,584,700원⁴²)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⁴³

- c.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제2 기간, 제3기간 및 제4기간에 대하여, 각각의 종전 기간에서 발생한 복리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있는데,⁴⁴ 이는 "매년"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라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⁴⁵ 이러한 청구인의 오류는, 처음 두 기간(제1기간, 제2기간)에서 발생한 이자를 제3기간 및 제4기간의 원금에 부당하게 추가시킴으로써, 두 번째 오류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23.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실제로는 자금의 사용 기회가 박탈되지 않은 자금(손해배상액이 아닌, 가정적 상황의 FMV에 상응하는 자금)에 대한 판정 전 이자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정정" 신청에는 치유 불가능한 오류가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³⁹ 청구인의 신청, ¶ 19의 표.

⁴⁰ 중재판정, ¶ 933 (주식이 매각될 때까지 손실은 실현되지 않음) 참고.

⁴¹ 청구인의 신청, ¶ 19의 표.

⁴² 중재판정, ¶ 935 (2015년 7월 16일 매수청구 주식의 총 가치 평가액) 참고.

⁴³ 중재판정, ¶ 937 참고.

⁴⁴ 청구인의 신청, ¶ 19의 표.

⁴⁵ 중재판정, ¶¶ 961-962, 995(c).

C.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이 대한민국의 신청과 같은 취지라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음

24. 대한민국은, 청구인이 스스로도 명백히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정정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의문을 가지길 바랍니다.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신청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러한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 위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의 정정 신청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의 신청이 제38조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할애하였으나, (그 입증에) 실패하였습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계산상의 오류(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대한민국의 신청과 판정 전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방법론 및 접근 방식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청구인의 신청을 동일시하려는 청구인의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5. 청구인은 자신의 정정 신청을 "예비적" 신청으로 주장하면서, 중재판정부가 양 당사자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거나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⁴⁶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청구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다고 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신청 또한 청구인의 신청처럼 인용될 수 없게 하려는 청구인의 시도는 잘못된 것이며 옳지 않습니다.

26. 대한민국의 신청은 전술한 제38조 상 정정 신청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i) "계산상의 오류" (및/또는 계산상의 오류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즉, 중재판정부가 세전 금액의 적용을 의도하였으나 의도치 않게 세후 금액을 적용한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⁴⁷ (ii) 이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오류입니다. (추가지급금(Top Up Payment)의) 세전 금액을 적용하려고 한 중재판정부의 의도와, 실제로는 세후 금액을 적용했다는 사실이 모두 중재판정문상 명백합니다.⁴⁸ (iii) 손해액의 계산과 중재판정부가 실시한 손해액 산정의 근거 및 방법론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 정정을 구하는 것입니다.⁴⁹ 대한민국이 신청한 정정 내용을 판정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실제적 방법이나 접근 방식에 그

⁴⁶ 청구인의 신청, ¶ 22 (“중재판정부가 제38조의 허용 범위에 관한 한국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에게 본 신청서 제20항에 적시된 정정을 요청합니다.”) 참고.

⁴⁷ 대한민국의 신청, ¶¶ 2, 10-12 참고.

⁴⁸ 대한민국의 신청, ¶¶ 10-12 참고.

⁴⁹ 대한민국의 신청, ¶¶ 9, 14-21 참고.

어떠한 변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재판정부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히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대체하는 것만이 요구됩니다.⁵⁰

27.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신청이 중재판정부가 판정 전 이자를 계산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주장과 유사하므로, 대한민국의 신청 역시 제38조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방법론적" 정정이라고 주장합니다.⁵¹ 이를 통해, 청구인은 제38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계산상의 오류"(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의 정정과 허용되지 않는 방법론적 정정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계산상의 오류"라는 정정 사유를 제38조의 정정 사유 목록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정정 신청 6항에서, 제38조에 따라 정정될 수 있는 "계산상의 오류"의 유일한 유형은 "이 조항이 정정을 허용하는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와 동등한 계산상의 오류"라고 주장합니다.⁵² 즉, 청구인에 따르면, "계산상의 오류"의 범주는 오탈자 및 기타 수치상의 문서기록의 오류(예를 들어 소수점 이하 자릿수 오류 등)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어떠한 법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위와 같은 주장은 "계산상의 오류"와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즉, 명백한 오기)"를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갖는 두 가지 별도의 유형으로 구별한 제38조의 문언에 위배됩니다.⁵³

28. 제38조 및 다른 중재규칙에 규정된 유사한 "정정" 조항에 대한 주석서들은, 정정할 수 있는 오류의 다양한 유형이 본질적으로 오직 기록과 관련된 오류(즉, 명백한 오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⁵⁴

중대한 오류는 특정 금액의 계산 실수와 같은 계산상의 오류이다. 문서기록상의 오기는 순전히 타자상의 오기이거나 잘못된 날짜, 거꾸로 된 숫자, 바뀐 단어와 같은 유사한 기술적 오기를 의미한다. 두 오류 모두 자명해야 한다.⁵⁵

⁵⁰ 대한민국의 신청, ¶¶ 14-21 참고.

⁵¹ 청구인의 신청, ¶¶ 8-9, 12.

⁵² 청구인의 신청, ¶ 6.

⁵³ UNCITRAL 규칙, 제38조 제1항 (“계산상 오류,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오류나 누락한 사항”의 정정을 허용함).

⁵⁴ 예를 들어, **RLA-177**, Stuart Isaacs, *Life after Death: The Arbitral Tribunal's Role Following Its Final Award*, in JURISDICTION, ADMISSION AND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LIBER AMICORUM MICHAEL PRYLES 357, 362 (Neil Kaplan & Michael J. Moser eds., 2018) (“상정된 중재판정의 정정에는 계산상의 오류, 문서기록상의 오기, 타자상의 오기, 및 유사한 성질의 오류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위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은 대개 명료하지만, 보여지는 것처럼 항상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오류는 이러한 유형 중 하나 이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

⁵⁵ **RLA-174**, Luiz Olavo Baptista, *Correction and Clarification of Arbitral Awards*, in ARBITRATION

29. 주석서 및 판정례도 "계산상의 오류"가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즉, 명백한 오기)"보다 더 넓은 범주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⁵⁶ 계산상의 오류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오류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⁵⁷

- "중재판정부의 판정 상으로는 특정 연이율의 이자가 2년 동안 지급되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판정의 주문 부분에는 1년 치 이자의 가치만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경우";⁵⁸
- "계산 시 고려하였어야 할 금액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⁵⁹
- "중재판정부의 비용 산정 시, 잘못된 계산, 잘못된 정보의 사용 또는 정보의 누락";⁶⁰
- "잘못된 계산을 포함하거나 계산에 잘못된 정보를 사용";⁶¹ 및
- "중재판정부가 실시한 수치가 제대로 합산되지 않거나, 판정의 이유에 실시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⁶²

30. 대한민국의 신청은 세전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중재판정부의 명시적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세후 금액(잘못된 정보)의 의도치 않은 적용(계산 시 고려하였어야 할 금액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한 (전형적인) 예시에 포함됩니다. 청구인의 잘못된 신청과 달리, 대한민국의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시한 방법론이나 접근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DVOCACY IN CHANGING TIMES (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 CONGRESS SERIES No. 15) 275, 280 (Albert Jan van den Berg ed., 2011).

⁵⁶ 예를 들어, **CLA-205**, Jan Paulsson & Georgios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Commentary on Section IV, Art. 38, ¶ 5 (“오류는 순전히 기계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고.

⁵⁷ 청구인은 신청 6항에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여섯 가지 "전형적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인용하는 주석서 같은 페이지에 제시 되어있는 다른 사례들을 누락하였습니다.

⁵⁸ **CLA-205**, Jan Paulsson & Georgios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Art. 38, ¶ 5 (청구인의 신청에 인용, ¶¶ 6-7).

⁵⁹ **CLA-205**, Jan Paulsson & Georgios Petrochilos, UNCITRAL ARBITRATION (2017), Art. 38, ¶ 10 (청구인의 신청에 인용, ¶¶ 6-7).

⁶⁰ **CLA-207**, Michael J. Moser & Chiann Bao, A GUIDE TO THE HKIAC ARBITRATION RULES (2d. ed. 2022), ¶ 11.89 (청구인의 신청에 인용, ¶ 7).

⁶¹ **CLA-208**, Maxi Scherer *et al.*, ARBITRATING UNDER THE 2020 LCIA RULES: A USER’S GUIDE (2021), ¶ 72 (청구인의 신청에 인용, ¶¶ 6-7).

⁶² **CLA-209**, Thomas H. Webster & Michael W. Bühl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AND MATERIALS (5th. ed. 2021), p. 617 (청구인의 신청에 인용, ¶ 6).

31. 대한민국이 신청한 대로 정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 성격이나 수"가 대한민국의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⁶³ 대한민국이 신청한 정정은 오로지 (1) 잘못 적용된 세후 금액을 (중재판정부의 원래 의도대로) 세전 금액으로 대체하고, (2) 중재 판정문의 다른 부분에도 상응하는 기계적 조정을 하도록 요구할 뿐입니다.⁶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된 반박은 세전 금액 자체가 중재 판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전 금액은 기록상 드러난 다툼이 없는 정보로부터 단순한 산술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반박은 (1) 청구인 스스로 중재판정부에 세전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세전 금액이 단순한 산술과 다툼이 없는 증거를 통해 도출된다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2) 청구인은 (정정 신청서에서) 대한민국이 세전 금액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잘못 기술하였다고 별도로 반박하지 않았으므로써(대한민국이 제시한 세전 금액의 정확성을 인정한 점, (3) 중재판정문상 오류가 명백하여 정정이 필요한 이상, 약간의 복잡한 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정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⁶⁵

32. 따라서, 대한민국의 신청을 청구인이 제기한 실패할 운명의 신청과 동일시함으로써 좌절(기각)시키려는 청구인의 시도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⁶⁶

⁶³ 청구인의 신청, ¶9.

⁶⁴ See **RLA-173**, David Caron & Lee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d. ed. 2013), Art. 38, p. 816 (잘못된 수치 하나를 정정한 결과 해당 수치가 사용된 중재판정의 다른 여러 부분을 그에 맞추어 함께 정정할 필요가 생긴 사안에 관한 *Harold Birnbaum and Islamic Republic of Iran*, IUSCT Case No. 967, 판정에 대한 정정 신청 No. 549-967-2, 19 July 1993 인용).

⁶⁵ **RLA-178**,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Decision on Rectification), 8 May 2023 (Binnie, Brower, Stern), ¶45 ("절차의 명백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 이자를 과도하게 계상함으로써 원금 손실 계산에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그 오류를 바로잡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⁶⁶ 청구인은 자신의 신청 11항에서, 세전 금액을 의도한 곳에 세후 금액을 의도하지 않게 사용한 것을 중재판정부가 제38조 정정 절차를 통해 정정할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유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8조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오류를 정정할 권한이 있으며, 오류를 정정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청구인은 관련 시점에 세전 금액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중재판정부에 제공했어야 마땅합니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중재판정부에게 감추었으므로, 중재판정부가 해당 금액을 찾기 위하여 중재기록을 참조하는 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IV. 결론 및 신청 취지

33. 상술한 이유로,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부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a. 청구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 그리고
- b.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한민국의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

* * *

정중히 제출합니다.



Anton A. Ware
Jun Hee Kim
Jane Wessel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피청구국 대리인



Kevin Kim
John P. Bang
Seokchun Yun
Ara Cho
Peter & Kim
피청구국 대리인